

(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제45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사회 : 교수철 이사장

1. 개회 예배

개회 예배를 아래 순서와 같이 드리다.

찬송가 : 210장

성경 : 빌 1:10~11

말씀 : 아름다운 발자취

설교 : 교수철 은급재단 이사장

2. 회원 점명

서기가 회원 점명을 하고 16명이 참석함을 보고하다. 이어서 감사 3명 (장병● 목사. 성근● 목사. 안준● 장로)과, 본부 감사위원회 위원장 최재● 목사과 서기 유재● 장로를 소개하다.

3. 개회 선언

의장이 성원이 됨을 확인한 후 제45회 교역자은급재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4. 전 회의록 낭독

제출된 유인물로 받기로 이은● 이사의 동의와 김길● 이사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5. 업무 보고

사무국 총무직무대리 이희● 권사의 인사에 이어 은급부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 집8p~10P) 주승● 은급부장대리가 보고하기로 하다. 은급부장대리가 업무 보고를 하니 성근● 감사가 현재 은급금 운용과 예금 잔액 현황이 감사위원회에 보고 한 것과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하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 되었으니 감사 보고 받은 후, 일문일답으로 업무 보고도 받기로 하다.

6. 부의안 처리

1) 감사선출

본부 감사위원회에서 은급재단 감사로 배정한 3인을 다음과 같이 감사로 선출 하자는 유강● 이사의 동의에 장동●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 일치 가결하다.

감사 : 장병● 목사(충청연회	지방	교회)
성근● 목사(충북연회	지방	교회)
안준● 장로(동부연회	지방	교회)

2) 감사위원회 소견 발표

최재● 감사위원장이 은급부 감사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한 후, 감사위원회의 서기인 유재● 장로가 그 동안 진행과 문제점에 대해 소견을 말하니, 사회자가 감사위원회의 노고에 대해 박수를 요청하자, 박수로 화답하다.

3) 감사위원회 소견에 대한 토의

출석한 이사들의 개인적인 소견이 있는 후, 이은● 이사가 감사 4명, 은급재단 이사 4명, 현직 감독 3명(백현기 감독회장 직무대행 제외)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동의에 참석한 이사 전원이 찬성을 하니, 가결이 되다.

대책위원회 명단 : 감 독- 가흥●, 김종●, 전용●

은급이사- 유강● 목사, 표창● 목사, 이은● 장로,
인기● 장로

감 사- 최재● 목사, 장병● 목사, 고양● 장로,
유재● 장로

(고수철 이사장이 대책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다. 동의집이 가결되다. 만장일치로)

법제화를 위해서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특별위원회를 두자는 유용● 이사의 동의와 이은● 이사의 재청으로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결의하다.

유용● 이사가 이사회에서 은급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대책위원회에 모든 사안을 위임하기로 동의하고 다수의 재청으로 위임기로 결의하다.

송윤● 이사가 임시이사회를 12월 초에 개최하자는 동의에 최금● 이사 재청으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다.

4) 목회관리위원 보고

7. 기타

1) 임시이사회에 김영● 전 은급부장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통보하기로 하다.

8. 폐회

장동● 이사의 폐회 동의와 김길● 이사의 재청이 가결되어 폐회하니 17시가 되다.

2011.11.25 제34회 임시이사회

제34회 은급재단 임시이사회 회의록

일시: 2011년 12월 15일 / 13시 30분

장소: 본부회의실

1. 개회 예배

고수철 이사장의 사회로 개회 예배를 드린다.

찬송 23장

기도 유강● 이사

성경 마태 1:20

설교 데려오라

축도 장동● 이사

2. 회원점명

서기가 회원을 점명하니 재적이사 21명 중 출석 17명과 결석 4명, 감사 3명 중 출석 3명임을 보고하다.

출석 이사: 고수● 이은● 인기● 표창● 최금● 유강● 김길● 송윤●

유용● 장준● 박현● 이일● 이원● 김용● 차정

장동● 이충●

결석 이사: 전용● 김정● 문재● 김경●

출석 감사: 성근● 장병● 안준●

3. 개회 선언

사회자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제34회 임시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4. 회의

1) 표창● 이사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동의하니, 유강● 이사가 재청을 하고,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찬성을 하다. 사회자가 회의 진행을 녹음할 것을 요청하니 모두가 찬성을 하다.

2) 유강● 이사가 의사 진행 발언으로 사회자인 고수철 이사장은 감독회장이 아니므로 사회권이 없음을 지적하고, 임시 의장을 세워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다. 이에 고수철 이사장은 “법적으로 본인이 이사장이므로 사회권이 있다” “이사들께서 사회를 보지 말라고 하면 보지 않겠다” 고 발언을 한 후, 이사들에게 “사회를 보지 않는 것”에 대해 의사를 물으니, 모두가 찬성하여 결의하다.(고수철 이사장 퇴장하다)

기탁금정산내역

- ①기탁금 : 3,000,000원(3월11일 입금)
- ②지출합계 : 1,789,557원(총지출액 2,556,510원)
- ③잔액 : 1,210,443원

이은● 이사 문제제기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우리가 요구한 답변이 아닌 것 같다. 장정 620단 제 29조 1, 2항에 있는 조항을 가지고 은급기금의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가였는데 3항의 기타사항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해석의뢰는 법리해석만 해 주면 될 것인데 은급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1, 2항은 사업의 본질이다. 재결의 요청을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

유강● 이사

일단 장정 상에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본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폭넓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질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부동산 투자는 불가하다고 해석한 것을 다시 올려봐야 똑같다. 그래도 올려야 한다면 김기● 이사를 통해 감독회장이 재결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조광 이사

입법의회 때 장정개정을 통해 은급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송윤● 이사 동의안

은급재단 소위원회 중에 운영위원회와 재산개발위원회가 모여서 의논한 다음 의견을 모아 임시감독회장님께 올려서 재결의를 요청하기로 송윤● 이사가 동의하고 양수● 이사가 재청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6. 은급재단 문제 대책위원회 보고(전용● 목사)

은급기금 사태를 일으킨 관련자들에 대해서 11명의 이름으로 형사고발을 했었다. 그러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그 원인을 보면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고 교리와장정 636단 제7조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의미는 일반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비롯해 펀드투자도 예치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주문 내용을 설명했다.

즉 관련자들이 은급 기금으로 펀드에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 했지만 그것은 장정에서 의미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과 다름이 없어 장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소견이었다.

전용● 목사는 김덕● 목사가 사무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소명자료를 받지도 못



한 채 개인 자격으로 은급기금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고등 검찰까지 가서 패소하고 결국 대검찰청에 항고까지 가 있는 상태라며 검찰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동일한 사항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항소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은급재단문제대책위원회의 판단이지만 만약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은급기금의 손실을 입힌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비난의 여론이 있어서 어떻게 이를 다룰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용● 목사는 은급재단이사회에서 4천만원 소송비용 중 2천만원은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은급재단이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항소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었다. 결국 이 문제는 다시 은급재단문제대책위원회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다루되 민사소송을 제기하던가 아니면 김덕● 목사 측 변호사를 도와서 승소하는 방향을 논의 하든가 이와 함께 교회법으로도 이들의 문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논의했다.

7. 간서명 이사 선출

송윤● 이사가 이사장께서 자백 할 것을 동의하니 유준● 이사가 재청하고 모두가 이를 찬성하여 김기● 이사장이 수도권에 있는 이사들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며 서울연회 이은● 이사, 서울남연회 강충● 이사, 중앙연회 송윤● 이사를 자백하다.

8. 기타사항

없음

9. 폐회

장성● 이사의 폐회 동의를 김광● 이사가 재청하니 모두가 찬성을 하여 조광● 이사의 기도로 마치니 오후 2시 20분이 되다.